##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송옥주・박 정・최인호

김영주 · 한정애 · 우원식

김경협 • 박용진 • 남인순

박홍근 • 이원욱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.

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 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25 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)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5조의2(어린이에 대한 진료
	지원)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
	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
	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
	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
	<u>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</u>
	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
	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